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계선신고 절차 개선 〉

■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864호)

2024.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계선신고 절차 개선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호선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9. 10.
3. 회 부 일 : 2024. 9.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계선(繫船)하려는 자로 하여금 관리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관리청은 신고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현행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선박의 상태 등을 실제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고서 검토만으로도 계선신고가 완료되어 노후되거나 부식된 선박의 선체 침수, 기름유출 등 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계선신고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선박 계선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관리청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 상태 및 계선 장소 등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선박 계선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계선신고 절차 개선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관리청이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선박을 계선하려는 자의 계선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선박상태 및 계선 장소 확인 등의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2항).

현행	개정안
제7조(선박의 계선 신고 등) ① (생략)	제7조(선박의 계선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u>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u>	② -----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상태 및 계선 장소 등을 확인하고 그 내용-</u>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계선하려는 자는 관리청(해양수산부 또는 시·도지사)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신고를 받은 관리청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있음.¹⁾

□ 그런데 현행법령에 따르면 계선 신고를 하려는 자가 신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하면 관리청은 신고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선박의 상태 등을 실제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고서 검토²⁾만으로도 계선 신고가 완료되도록 하고 있어,

계선신고 완료된 선박의 선박상태가 노후되거나 부식된 경우 선박의 선체 침수, 기름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개정안은 이에 선박 계선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관리청으로 하여금 선박 상태 및 계선 장소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선박 계선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보여짐.

- 또한, 최근 부산항 등 무역항 내 방치선박, 장기계류 선박***등이 159척에 이르고 있는데, 신고완료 되었으나 노후화된 선박의 장기계류가 지속될 경우 선체 침수나 기름유출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더욱 높은 상황이므로 장기계류 선박과 관련된 행정절차인 계선신고에 관한 절차 처리 과정의 개선이 필요해 보임.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2. “관리청”이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

가.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해양수산부장관

나.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10. “계선”(繫船)이란 선박이 운항을 중지하고 정박하거나 계류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선박의 계선 신고 등) ①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계선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2) 참고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무역항 장기계류선박 현황]

(단위 : 척, 2024년 8월기준)

구분	계	계선신고 선박	방치선박*	감수보존 선박**	장기계류 선박***
부산	176	17	13	4	142
인천	18	8	10	0	0
여수	4	1	-	1	2
마산	1	1	-	-	-
울산	15	15	-	-	-
동해	2	2	-	-	-
군산	17	16	1	-	-
목포	13	-	5	1	7
포항	1	-	-	-	1
평택	1	-	1	-	-
대산	-	-	-	-	-
계	248	60	30	6	152

* 방치선박 : 계선신고 등 행정행위 없이 무단으로 방치하여 6개월 이상 미운항 중인 선박

** 감수보존 선박 : 채무자 소유의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신청 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선박을 감수하고 보존하기 위한 절차 중에 있는 선박

*** 장기계류 선박 : 선박검사기관에 계선사유서를 제출하였으나, 관리청에 계선신고는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미운항 선박

□ 다만, ‘계선신고 제도’는 장기간 운항하지 않을 경우 선박을 안전하게 묶어두기 위한 것이나, 현행 법령에는 실제 항만시설사용과 관련한 ‘계선기간’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 장기계류선박이 어떤 것인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행정청에서 적용상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선기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참고로, 「선박안전법 시행령」에서는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선박을 운항하지 않을 목적으로 장기간 계류(이하 계선)할 경우,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계선사유서 및 선박검사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계선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이 종료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³⁾

□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무역항 항내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계선 신고수리 절차 개선하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계선신고가 진행되는 현행 법령 체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아닌 해양수산부령에 선박 상태 확인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19

3) 「선박안전법」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 외의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선박안전법 시행령」

2조(적용제외 선박) ①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이하 “선박검사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그 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한 후 해당 선박을 계류(이하 “계선”이라 한다)한 경우 그 선박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의 계선기간 및 계선사유 등을 기재한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계선기간 등의 서류 제출) ①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려는 선박소유자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계선사유서에 해당 선박의 선박검사증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선사유서의 계선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이 끝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참고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선박계선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호출부호가 없는 선박은 호출부호란에 선박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선박	IMO번호(또는 호출부호)	연도-입항횟수-신청횟수 - - -		
	선명	총톤수 G/T		
선주 또는 해운 대리점	업체명	업체코드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업체 주소	전화번호		
입항 · 출항	입항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항예정일시	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	장소 코드	장소명		
	기간	년 월 일 시 분		
	사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선박계선을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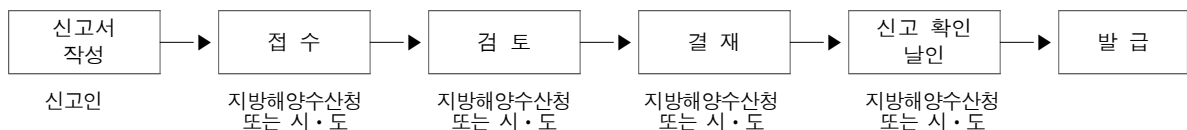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귀하

처리절차



제 호

선박계선 신고 확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계선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